

# 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611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4. 1.

제 출 자 : 홍진옥 의원, 김현식 의원,  
류호담 의원, 이재문 의원

## 1. 제안이유

- 충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노인 목욕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  
(안 제 2조 ~ 제3조)
- 나. 노인 목욕비 지원방법 및 목욕권 사용,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 4조 ~ 제 7조)
- 다. 요금 정산, 수불관리, 환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
(안 제8조 ~ 제10조)

## 3. 입법 예고 결과 : 의견없음.

## 4. 기타 참고사항(집행부 의견조회)

- 사업의 효과성·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

## 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에 따라 충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사기 진작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지원 대상자)** 지원 기준일 현재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노인 목욕비 지원 대상자 (이하 "지원 대상자"라 한다)로 한다.

**제3조(지원기준)** 충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노인 목욕비를 지원한다.

- 관내 목욕업소 이용요금에 상응하는 목욕권으로 분기별 3매 지급한다.
- 대상자가 전입이나 연령 도달 등의 사유로 처음 대상자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.
-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가나 시 등의 목욕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
**제4조(지원 대상자 결정)** 시장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·면·동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급기준일 현재 대상자를 조사하여 보고하면 대상을 결정한다.

**제5조(지원 방법)**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목욕권을 제작하여 읍·면·동장에게 배부하고, 읍·면·동장은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지급한다.

**제6조(목욕권 사용)** 대상자는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에서 목욕권을 사용 할 수 있으며,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.

**제7조(협약 체결)** 시장은 충주시 목욕업협회장(이하 "목욕협회장"이라 한다)과 노인 목욕권 사용에 관한 상호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8조(요금 정산)** ① 노인 목욕비를 청구하려면 청구서(별지 제2호서식)에 대상자로부터 받은 목욕권과 지급통장 사본 등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.  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갖춘 서류를 확인한 후 해당 계좌로 입금한다.

**제9조(목욕권의 수불 관리)** 시장은 읍·면·동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수령 명부(별지 제3호서식)를 갖춰 놓고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.

**제10조(환수 처리 등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 조에 따른 정산요금을 환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대상자가 아닌 자가 목욕권을 사용하였을 때
2.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산요금을 청구하였을 때

**제1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## 노인 목욕권

(앞면)

20 년도 분기 No. ■■■■■

## 노인 목욕권

충 주 시 장  직인

60mm × 90mm [보존용지(1종) 120g/m<sup>2</sup>]

(뒷면)

### 유의사항

- 본인 외 사용을 금합니다.
- 충주시 관내 목욕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사용기간 : 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

※ 혈압이 높거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은 입욕을  
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## 노인 목욕비 청구서

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|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|---|
| 접수번호  |                  | 접수일자 |          | 처리기간 | 일 |
| 청 구 인 | 업소명 :<br>대표자 :   |      |          |      |   |
| 사 업 명 | 충주시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 |      |          |      |   |
| 청구금액  | 금 원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|   |
| 사용매수  | 매                |      | 이용자수     | 명    |   |
| 예금주명  |                  | 금융기관 |          | 계좌번호 |   |
| 사업기간  | 20 . . .         | ~    | 20 . . . |      |   |

「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
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충 주 시 장 귀하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갖출<br>서류 | 1. 사용한 목욕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2. 사업자등록증이나 신고필증 사본(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)<br>3. 통장사본 |

210mm×297mm [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

### [별지 제3호서식]

## 노인 목욕권 수령 명부

210mm×297mm [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

## 관계법령

### □ 노인복지법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6조(경로우대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·능원·박물관·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.